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고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및 그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본 대학교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라 대학 및 사립학교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 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 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 가. 본 대학교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나. 본 대학교와 공사·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다. 그밖에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자

제4조 (책무) 본 대학교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 (담당부서) ① 본 대학교는 다음 각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3. 그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기획처에서 담당하며, 감사실장이 통할한다. 다만, 공익신고 사안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공익신고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를 협조부서로 정하고 공익신고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원 하도록 한다.

제 2 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담당 부서는 공익신고자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는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보완의 요구)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담당 부서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는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9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담당 부서는 접수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본 대학교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본 대학교는 제1항의 조사·수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본 대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담당 부서는 접수된 공익신고가 본 대학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한다.

② 담당 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1조 (공익신고의 종결) 공익신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7.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제3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익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는 교직원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 1. 공익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 사항
- 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익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는 교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 대학교는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징계 및 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총장은 교직원의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교직원을 징계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교직원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익신고자 보호) 총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 익 신 고 서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i>알고 있는 경우 기재</i>
	직위	<i>알고 있는 경우 기재</i>	연락처	<i>알고 있는 경우 기재</i>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i>별첨 가능</i>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본교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